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54

2016. 12. 5.
기 획 경 제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6년 11월 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16. 12. 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장혁재)

○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개선 추진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오류 및 일본어투 표현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수정하여 시민들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를 기존의 평가용역 방식에서 서울시의 성과관리체계로 변경하기 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책임운영기관 운영 현황

○ 책임운영기관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의 사무 가운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해 행·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임.

○ 시는 2008년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을 확정한 이후 현재 서울역사발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교통방송 등 3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

〈책임운영기관 운영현황〉

구 분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교통방송
기관장	3급(개방형)	3급(개방형)	3급(개방형)
기 구	2부 7과 1소 1관	2부 1관 6과	2실 4국 18부
인 력 (정/현원)	83/90명	83/78명	166/158명
예 산 (2016년)	15,802백만원	12,403백만원	88,599백만원
기 능	-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보존전시 - 전통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국내외 박물관 교류	- 미술관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 국내외 미술관 교류, 미술관련 행사 개최	-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 라디오, tv, DMB 등을 통한 의정·시정 및 생활정보 제공

○ 시는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와 책임운영기관 존속여부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중요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인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참고자료).

○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최근 3년간 매년 2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해 연도별 사업계획승인과 평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음.

○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행정서비스 효과성 제고라는 책임운영기관 본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공공성에 따른 자율성 제한이나 출연기관 추가설립과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확대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당초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해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에 대한 파격적인 확대 등 제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음.

다.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의 개선(안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 안 제6조와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 평가 제도와 관련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시는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와 관련해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평가하도록 하고, 관계전문가나 기관에 평가에 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이 평가결과를 기관장의 채용계약의 연장과 해지, 성과상여금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책임운영기관 평가주체 및 관련 예산내역〉

연 도	평가주체	평가용역 금액	용역기간
2016 ('15년 실적평가)	한국경제경영연구원	42,100천원	'16.5.17~'16.8.28
2015 ('14년 실적평가)	한국경제경영연구원	42,400천원	'15.2.3~'15.5.15
2014 ('13년 실적평가)	한국경제경영연구원	49,500천원	'14.2.12~'14.6.11

○ 최근 3년간 시는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실적평가를 의뢰하는 형태로 평가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과 결과를 기관 성과포상금과 연계하고 있음.

○ 하지만, 책임운영기관운평위원회는 수 차례 3개 책임운영기관의 성격이나 주요 사업 내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또한, 기존의 외부 용역기관이 대행하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가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정량평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 내부의 성과관리체계로 편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따라 시가 실시하는 기존의 3급이상 사업소 평가그룹에 책임운영기관을 추가로 편입해 업무난이도와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담보하고 부수적으로 연간 약 7천만원의 평가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 시 성과관리 체계가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성과중심 체계로 이미 확립된 상태에서 구태여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부 용역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의존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평가제도의 변경 자체는 환영할 만한 조치임.

○ 다만,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의 평가체계를 책임운영기관에 적용함에 따라 민간과의 서비스 경쟁을 통한 효과성 제고라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자체의 무용론으로 이어질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고가 요구됨.

라. 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등(안 제 6조 등)

○ 안 제6조 등은 2013년 기존의 '지방계약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던 「지

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이 폐지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지방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일본어투 표현 등을 어법에 맞고자 정비하고자 함.

○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이나 조문변경은 사소하지만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혼란을 막아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제1항”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로, “범위안에서 2년이상”을 “범위에서 2년 이상”로 “있다.다만”을 “있다. 다만”으로 하며, 제3항제5호 중 “연장 또는 해지”를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9조제1항제3호”를 “제10조”로 하고, “연장·해지”를 “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책임운영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평가결과의 반영、공표)”를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책임운영기관 평가는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운영의”를 “책임운영기관 운영의”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8조”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로 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를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장제1항 중 “4급이하”를 “4급 이하”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관장의 채용 등) ① 기관장은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능력 또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제6조(기관장의 채용 등) ① ---------- ---------- ---------- ------ 지방임기제공무원----------.
②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2년이상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지방직영기업의 기관장의 임기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다.	②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2년 이상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
③ 시장이 기관장을 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채용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 연장----------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기관장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 제10조---------- ---------- 연장 ----------
⑤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장과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7조에 따른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가 2회 연속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최하위등급인 경우	<삭 제>
제9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 및 관련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9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 및 관련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에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위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평가결과의 반영·공표) <신 설>	제10조(책임운영기관의 평가) ① 책임운영기관 평가는「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① 기관장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
②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임용권의 위임) 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① ----------.
1.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	1. 지방임기제공무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5조(근무실적 평가) ① (생략) ② 기관장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8조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에 대한 별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근무실적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관장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5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
제17조(성과상여금 등) ① (생략)	제17조(성과상여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관장은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 제10조에 따른 ----------.
제19조(공무국외여행) ① 기관장은 4급이하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에 공무로 인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공무국외여행) ① 기관장은 4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에 공무로 인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